- (바) 유자격 운전자(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 이동식크레인 등 작업에 적정한 양중장비를 선정하고, 자재 및 부재의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장 안전관리

- (가) 항타기 운전 작업 시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럭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운전 중인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와 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 (마)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장비 등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 에 따른 일정한 표준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 (바)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경우
 - 적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아) 파일 항타 위치에 가스관·지중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장물 등의 유무를 조 사하여 이설 또는 방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 항타·천공 등 건설기계의 작동 중에는 기계장치 보수작업을 금지하여 야 한다.